

의안번호	제613호
의결 연월일	2014년 월 일 (제326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자	교육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14년 1월 21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613
----------	-----

제안연월일: 2014년 1월 21일

제안자: 교육위원회위원장

□ 주 문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학교에 지원해 오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2013. 8. 7.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2013. 7. 29. 개정된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세입과목구조 변경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로 인하여, 2014년부터 충북도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군등 6개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됨으로써,
- 자치단체 간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 제안이유

-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음.

1) “200 세외수입→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으로 변경(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원금 수입)

-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 2013. 8. 6일 제정하여 동년 8. 7.부터 시행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2013. 7. 29. 개정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와 상충함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의 기준이 적용 될 경우,
 - 충청도 내에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군등 6개 지방자치단체(초·중·고 128개교 24,180명)²⁾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이 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게 되며,
 - 지난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74억 7,140만원³⁾으로, 이 예산은 돌봄교실, 농·산촌방과후 활동, 지역인재육성사업, 체험학습, 원어민 영어교실, 도서관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들 사업을 중단하거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이,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지나치게 관여하여 지방자치권과 재정권 훼손,
 - 자치단체 간 교육격차 심화,

2) 충청북도교육청 2013. 9. 1 자료.

3) 보은군 12억 6,318만원, 옥천군 18억 8,417만원, 영동군 12억 5,390만원, 괴산군 13억 7,494만원, 증평군 8억 5,570만원, 단양군 8억 395만원(2013년 충청북도교육청 자료) ※ 무상급식비 제외

- 교육환경 악화 가속화,
 -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폐교,
 - 지역 공동체 유지 및 지역 발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 완화와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여부를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의 개선을 촉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건의 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지방세분석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전행정부)

<과목변경 2013. 7. 29.>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 세외수입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과목변경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 발생
222 잉여금	710 보전수입 등	
223 전년도 이월금	711 잉여금	
224 전입금	712 전년도 이월금	
225 예탁금 및 예수금	713 용자금 원금 수입	
226 용자금 및 원금수입	714 예치금회수	
	720 내부거래	
	711 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 보낼 곳: 서남수 교육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서남수 교육부장관님!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님!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의 사회·문화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공동체 유지 및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에 부합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사업 및 교육활동 지원을 지속해나감으로써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긍정적 성과들을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줄이는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현재 재정이 열악한 82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 정책이 적용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군등 6개 지역에서 전년도 기준 74억 7천여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농·산촌지역으로 재정수입이 열악한 자치단체며, 현재도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수입 증가를 위한 현실적인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없이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결국, 지금의 정책은 지역 발전의 불균형과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난 20여년 간 상생 발전해 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농·산촌 지역의 지자체를 황폐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등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도의회는 160만 충청도민의 열망을 담아 정부의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